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신동욱・김은혜・고동진

강승규・권성동・주호영

박상웅 · 강대식 · 백종헌

구자근・안상훈・김 건

박정하 • 신성범 • 유용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·결산 심사, 국정감사,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·법원·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.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살펴봄으로서 법률안 완결성을 제고하고 있음.

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.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을 장기간 계류시켜 소관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하는 등 다른 상임 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됨.

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,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함(안 제37조제1항 및 제41조 등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사법위원회
- 3. 법제위원회

법률안의 위헌성, 입법목적,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 · 규칙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의 심사(이하 "체계·자구 심사"라한다)에 관한 사항

제4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법제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장이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44조제3항 단서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한다.

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한다.

제58조제10항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한다.

제59조제3호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한다.

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한다.

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각각 "법제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각각 "법제위원회"로 한다.

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한다.

제86조제1항 전단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"을 "법제위원회 위원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법제위원회"로 한다.

제130조제1항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사법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사법위원회"로 한다.

제131조제1항 중 "법제사법위원회"를 "사법위원회"로 한다.

제134조제1항 중 "법제사법위원장"을 "사법위원회 위원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
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	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
항은 다음과 같다.	항은 다음과 같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제사법위원회	<u>2. 사법위원회</u>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<u>아. 법률안·국회규칙안의 체</u>	<u><삭 제></u>
계 ·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	
관한 사항	
<u><신 설></u>	<u>3. 법제위원회</u>
	<u>법률안의 위헌성, 입법목적,</u>
	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
	법률안・규칙안의 체계・형
	식과 자구의 심사(이하 "체
	계·자구 심사"라 한다)에
	관한 사항
<u>3.</u> ~ <u>17.</u> (생 략)	<u>4.</u> ~ <u>18.</u> (현행 제3호부터 제1
	7호까지와 같음)
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~ ⑤	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법제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
	의장이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

제44조(특별위원회) ①·② (생략)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. 다만,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 조에 따라 <u>법제사법위원회에</u> 체계·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(예산안, 기금운용계획안,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·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법률안은 제외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(이하이 조

따라 당석을 이탈할 당시의 소
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 의원
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소속
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제44조(특별위원회) ①·② (현행
과 같음)
③
법제위원회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 -
<u>법제위원회</u>

에서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(大體討 論)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. 다만,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 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. ② ~ ⑧ (생 략)

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.

⑩ (생 략)

- 제58조(위원회의 심사) ① ~ ⑨ 저 (생 략)
 - ① <u>법제사법위원회</u>의 체계·자 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 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.

제59조(의안의 상정시기) 위원회 제5

<u>.</u>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9
<u>법제</u>
위원회
⑩ (현행과 같음)
ll 58조(위원회의 심사) ① ~ ⑨
(현행과 같음)
⑩ 법제위원회
네59조(의안의 상정시기)

는 의안(예산안, 기금운용계획 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 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 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2. (생략)
- 3. 체계·자구 심사를 위하여 <u>법제사법위원회</u>에 회부된 법 률안: 5일

4. (생략)

제82조의2(입법예고) ① 위원장은
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
안(체계·자구 심사를 위하여
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
안은 제외한다)의 입법 취지와
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
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
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
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체계・자구 심사를 위하여
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:
٦٨١
5일
5일 4. (현행과 같음)
_
4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제82조의2(입법예고) ①

- 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· 2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- 제85조의2(안건의 신속 처리)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(체계・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 한다)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 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 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(動議)(이하 이 조에 서 "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"라 한다)를 의장에게 제출하고, 안 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,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85조의2(안건의 신속 처리) ①
법제위원
<u> </u>
,

으로 의결한다.

- ② (생 략)
-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. 다만,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·자구심사를 그 지정일,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.
- ④ 위원회(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)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·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회부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.
- ⑤ <u>법제사법위원회</u>가 신속처리 대상안건(체계·자구 심사를
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법제위원회</u>
④ <u>법제위원회</u>
<u>법제위원회</u>
<u>.</u>
⑤ <u>법제위원회</u>

위하여 <u>법제사법위원회</u>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<u>법제사법위원회</u>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.

⑥ ~ ⑧ (생 략)

제85조의3(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(체계·자구 심사를 위하여 <u>법제사법위원회에</u>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부의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
<u>법제위원회</u>
<u>법제</u>
<u>위원회</u>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85조의3(예산안 등의 본회의
자동 부의 등) ① (현행과 같
<u>하</u>)
②
법제위원회
<u>.</u>

니하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86조(체계·자구의 심사)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,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 이 경우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수 있다.

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세86조(체계·자구의 심사) ① -
<u>법제위원회</u>
<u>법제위원회 위</u>
원장
·.
②
<u>법제위원회</u>
③ 법제위원회는

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. 다만,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,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(생 략)

- ⑤ <u>법제사법위원회</u>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 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0조(탄핵소추의 발의) ① 탄 전 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, 본회의는 의결로 <u>법제사법위원회</u>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가 제1항에 때	구라	틴
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

	-
	-
	-
	-
	-
	-
	-
	-
	-
	-
	-
 ④ (현행과 같음)	
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법제위원회</u>	-
	-
	-
	-
⑤ <u>법제위원회</u>	-
⑤ <u>법제위원회</u>	-
⑤ <u>법제위원회</u>	-
⑤ 법제위원회 세130조(탄핵소추의 발의) ① 사법위원회	-
⑤ <u>법제위원회</u>	-

핵소추안을 <u>법제사법위원회</u>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 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 표로 표결한다.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.

③ (생 략)

제131조(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) ① <u>법제사법위원회</u>가 제 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 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 사·보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)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(正本)을 <u>법제사법 위원장</u>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, 그 등본(謄本)을 헌법재판소,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.

② (생략)

사법위원회
③ (현행과 같음)
제131조(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
조사) ① <u>사법위원회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
과) ①
사법
<u>위원회 위원장</u>
② (현행과 같음)